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이윤희 의원 외 15명

나. 의안번호 : 제1233호

다. 발의일자 : 2016. 5. 30

라. 회부일자 : 2016. 5. 31

2. 제안사유

- 최근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
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「수목원·정원
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대응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
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
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
나. 시민·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·장려를 위한 사항 (안 제12조)

다. 일반시민 대상의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운영·인증 및 민간교육과정 지원에
관한 사항 (안 제13조~제15조)

라. 정원문화 진흥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'서울정원지원센터'의 설치,

수행사업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)

마. 시민 여가생활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박람회의 개최, 운영 및 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~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부서와 협의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(이하 “조례”)」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2014년부터 시작된 민선 6기 서울시 공원녹지 분야의 정책비전은 “숲과 정원의 도시, 서울”임. 푸른도시국에서는 비전인 ‘천개의 숲과 천개의 정원’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비롯한 시민참여 원칙 등과 함께 정원문화 확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추진(안 제 7조~제10조)

-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‘정원진흥 실시계획’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할 것인가? 변경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음.
- 따라서 정기적인 보완이나 수정·변경 규정 없이 수립된 ‘정원진흥 실시계획’은 사회적 요구나 트렌드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.

2)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(안 제11조~제16조)

-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원 및 정원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3개 대학교와 협력하여 시민정원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.
- 또한 시민주도 녹화운동 및 녹색 자원봉사 활성을 위해 ‘시민정원사’, ‘시민조경아카데미’, ‘아름다운 정원가꾸미’ 등 다양한 정원문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.
-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원전문가 육성은 매우 필요한 사항임. 그러나 정원관련 전문가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기 보다는 자격기준과 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.
- 제16조 서울정원지원센터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위해 설치·운영되는 것이지만, 일반적으로 지원센터는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아 또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.

므로 제16조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·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법인 및 단체에 그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정원문화 지원사업은 업무 특성상 ‘대행’으로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‘위탁’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.

3) 정원박람회 (안 제17조~제19조)

- 2015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정원박람회는 52개 업체 및 공공기관 15개의 참여로 80개 서울정원을 조성하였고, 정원산업 우수제품 전시, 정원문화 배우기, 생활정원만들기, 정원문화 즐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.
- 그 결과, 256건의 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 정원박람회 홍보효과가 나타났으며, 57개 기관과 단체가 방문하였고 10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총 8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음.
- 대규모 공원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좁은 땅에서도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정원디자인을 보여주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조례로 정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서울시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- 그러나 제18조(정원박람회의 개최)에는 “정기 또는 수시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”고 하였으나,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한다는 것은 개최기간이 명확하지 않고, 정원박람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임.

4)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보완

- 법제처 ‘법령입안 심사기준’에 의하면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, 목적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음.
- 따라서 현행 목적규정에 있는 약어(이하 “정원법”)을 삭제하고, 목적규정 다음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제7조에 사용하도록 수정하여야 함.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3조와 제4조2항의 ‘강구한다’는 ‘마련한다’로 수정 하여야 함.